

화순군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0. 16

(제9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

나. 개정사유

- 제5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1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화순군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 허가기간 만료이전에도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을 금회 신설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**7. 첨부 : 화순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**

화순군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점용허가 기간내 점용목적이 완료되어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점용료의 납부등)①~② 〈생략〉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.</p> <p>1.~2. 〈생략〉 3. 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8조(점용료의 납부등)①~② 〈현행과 같음〉 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~ 2. 〈생략〉 3. <u>점용기간내 점용목적이 완료되어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</u></p>